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가단1036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98,487원 및 그 중 2,492,726원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6. 12.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124,59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10,124,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 장현자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1층 내지 4층 각 573.12㎡, 5층 내지 9층 각 566.10㎡, 10층 561.42㎡, 11층 553.41㎡, 12층 537.75㎡, 13층 448.45㎡, 14층 332.28㎡, 15층 165.36㎡, 지하 1339.1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 노인정 30.60㎡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공동변소 4.50㎡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경비실 15.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펌프실 지하 4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750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50290분의 2851 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B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B은 2008. 8. 19. 소외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1, 2 각 카드발급신청서, 신용카드원장조회 참조).

그런데 위 B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카드는 2018. 11. 14. 소외 E주식회사에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E는 2019. 12. 1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B는 원고에게 금 5,898,487원 및 그 중 금 2,492,726원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피고 B는 2013. 10. 31. 소외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즈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B는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F카드는 2016. 3. 11. 소외 G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¹⁾,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G는 2017. 7. 7.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한편, 위 G는 B를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속초지원 2016차전 178), 2016. 10. 5. 지급명령이 위 B에게 송달되었으며, B이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19. 확정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B는 원고에게 금

1) F카드 및 G는 최초 2006. 1. 27.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F카드의 관련 채권을 G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4,226,109원 및 그 중 금 1,565,729원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7호 중 채권계산서 참조).

(3) 소결

진술하였듯이 원고는 위 (2)항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B 을 상대로 위 (1)항의 채권에 대해서만 양수금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2)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인 10,124,596원입니다(5,898,487원 + 4,226,109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B 의 아버지는 소의 H 였는데, 위 H 는 2020. 1. 30. 사망하였고, 위 B 은 위 H 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H 의 상속인들 및 B 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 C 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0. 6. 15. 피고 C 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B의 재산인데,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택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C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2015. 2. 6. '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0. 7. 7.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참조).

따라서 본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1. 11. 18.까지의 원리금인 금 10,124,596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H는 2020. 1.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피고2)와 자식들인 J, B(피고1)이 있었고,

장남이었던 K가 그 이전인 2014. 10. 24. 사망하였으므로 K의 배우자인 L와 자식들인 M, N가 있습니다(대습상속인임).

(이상은 갑 제9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0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1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모녀관계이고, 채무자 피고 B의 상속지분은 2/9 입니다.

나. 위 H는 2020. 1. 30.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0. 6. 12.입니다(갑 제12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0. 6.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던

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 C이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2. 채무자 피고 B의 무자력

가. 법원행정처의 2022. 3. 11.자 회신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2020. 6. 12.)를 거쳐 조희일 현재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나. O의 2022. 6. 10.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사해행위 당시(2020. 6. 12.)

- ① P카드에 금 14,951,000원(2016. 3. 30. 연체 발생),
 - ② Q카드에 금 1,980,000원(2016. 4. 22. 연체 발생),
 - ③ R카드에 각 금 1,083,000원(2016. 4. 22. 연체 발생), 금 6,917,000원(2016. 4. 22. 연체 발생),
 - ④ S에 각 금 15,000,000원(2016. 5. 3. 연체 발생), 금 790,000원(2016. 4. 22. 연체 발생),
 - ⑤ T에 금 2,649,000원(2016. 4. 20. 연체 발생),
 - ⑥ U에 금 18,927,000원(2016. 5. 2. 연체 발생),
 - ⑦ 국세청(속초세무서)에 금 10,000,000원(2016. 5. 28. 공공정보 등재)
- [위 회답서 중 '신용정보 조회 결과' 1쪽 참조]
- [사해행위 이전 연체 및 공공정보 발생하여 조희일 현재 미변제된 채부들입니다]

⑤ 원고에 금 4,058,455원(2,492,726원, 1,565,729원 ; 원금 기준,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임)

등 **합계 76,355,45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위 채무는 이자는 제외한 '원금'만에 대한 것인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채무액은 더 클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적극재산은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B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 인해 B은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소장에서 밝혔듯이 **사해행위 이전** 설정되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I은행)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는 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사실심변론종결시와 가까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10,000,000원입니다(갑 제13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결과 참조).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V아파트(84.98㎡)에 대한 2021년 동안의 실거래가 중 가장 적은 매매가입니다(2021년 거래가 가장 최근의 거래입니다).

I 은행의 2022. 2. 24.자 회신에 의하면, 사해행위(2020. 6. 12.)와 가까운 2020. 6. 15.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9,333,296원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310,000,000원)에서 위 채무액(9,333,296원)을 공제한 300,666,704원 중 B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66,814,823원(300,666,704원×2/9)이 위 부동산 중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원고는 위 책임재산(66,814,823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10,124,596원, 갑 3, 7 각 채권계산서) 중 더 적은 금액인 10,124,59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